

장위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



성 북 구
(복지정책과)

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위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

의안 번호	356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 : 2024. 11.
제출자 : 성북구청장

1. 제안이유

가. 필요성

기존 수탁운영법인의 운영기간 만료(2025.4.15.)에 따라 장위종합사회복지관의 민간위탁(재위탁 또는 재계약)을 검토하여 사회복지관 운영의 효율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민간위탁에 대한 사전동의를 구함

나. 추진근거

-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5항, 동법 시행규칙 제21조, 제21조2
-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
-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, 제10조

2. 주요내용

가. 민간위탁 시설현황

시설명	소재지	규모(㎡)	개관일	비고(현(現) 위탁현황)
장위종합 사회복지관	화랑로 237, 2층(본관)	95.96	2020.4.16	사단법인 일촌공동체 (위탁기간 2020.4.16 ~ 2025.4.15)
	화랑로33가길 34, 101호(별관)	52		

나. 위탁기간 : 2025. 4. 16. ~ 2030. 4. 15. (5년)

다. 위탁사무의 범위

- 장위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관한 사항
- 시설 유지보수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
- 기타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3.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

- 사회복지관 사업의 능률성 극대화와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민간위탁 운영하여 사업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 내실화 도모
- 사업의 연속성, 종사자의 고용 승계 등을 준수

4. 향후계획

- 성과평가 및 지도점검 : 2024. 11 ~ 12
-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 구성 및 심사 : 2025. 1. ~ 2.
- 협약체결 : 2025. 4.

5. 참고사항 (관계법령)

(1) 지방자치법 제117조(사무의 위임 등)

-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·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.

(2)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(사회복지시설의 설치)

-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(이하 “시설”이라 한다)을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 <개정 2011. 8. 4.>
- ⑤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. <개정 2011. 8. 4., 2012. 1. 26., 2019. 1. 15.>

(3)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(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)

- ① 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에 따라 수탁하는 법인(이하 “수탁자”라 한다)을 선정해야 한다. 다만,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립한 비영리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경우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하지 않을 수 있다. <개정 2008. 11. 5., 2012. 8. 3., 2019. 6. 12., 2020. 1. 3.>

(4)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(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)

- ③ 구청장은 국가 또는 서울특별시의 위임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 장관 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. 다만, 자치사무를 재위탁 또는 재계약 할 때 에도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

(5)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0조(계약체결 등)

- ③ 구청장은 재계약을 하려고 할 때에는 계약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수탁기관의 운영 성과 등을 평가한 후 제8조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·의결을 거쳐야 한다.
(개정 2016.12.29.)

(6)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(관리·운영의 위탁)

- ③ 제1항에 따라 시설의 관리·운영을 위탁하는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「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」(이하 “규칙”이라 한다) 제21조 및 제21조의2에 따라야 하며, 시설의 위탁기간은 규칙 제21조의2제2항에 따라 5년으로 한다.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규칙 제21조제2항에 따른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 차례에 한정하여 재계약할 수 있다. (개정 2021.5.6.)